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1.16.(화)			
사업명/신청위치	천호동 451 복합빌딩 신축사업 / 강동구 천호동 451, 457-37			
의결번호	2018-01-3	심의결과	조건부의결	
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제28조 및 「건축법」제4조 경관·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〈 건축 분야 〉

□ 건축계획

- 50미터 도로 앞 공개공지는 도로쪽에서 접근이 차단되지 않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은 가변성있게 디자인하여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.
-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출입문(2개소)은 주출입구 사용자 및 승강기홀 대기인원과 상충되지 않는 않도록 위치 변경 바람.

□ 구조

- 이중골조시스템 적용시 지진하중의 기본 주기값 적정여부 및 중간모멘트 골조의 변형 능력 확보를 위한 연성 상세 설계를 구조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.
- 연결통로 접합부 설계시 풍하중에 의한 수평 변위(X방향, 8.76cm)가 크므로 연결 통로 접합부의 상세 설계 검토 바람.
- 지하6층 규모(지하 길이 약25M)에 적정하게 토압과 수압력에 안전하도록 지하 외벽 설계 검토 바람.

〈 공통사항 〉

- 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
 - 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
 - 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+등급 적용,
 - 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9.1% 적용

- 계속 -

2018.1.16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1.16.(화)			
사업명/신청위치	천호동 451 복합빌딩 신축사업 / 강동구 천호동 451, 457-37			
의결번호	2018-01-3	심의결과	조건부의결	
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

〈 공통사항 〉(계속)

- 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"불필요한 시설"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
- 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
 - 1) 대지면적 1.000 m²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.500 m²이상의 건축물.
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'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적용.
- 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18.1.16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